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출석 요구 근거 마련〉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41호)

2025. 2.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형수 · 임종득 · 이종배 · 이만희 · 송석준 · 조배숙  
곽규택 · 장동혁 · 엄태영 · 유상범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4. 11. 14.

3. 회 부 일 : 2024. 11. 15.

※ 의안번호 : 554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21조는 국회 출석요구 대상을 국무총리 ·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기본으로 규정하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법」에도 명확한 출석요구 근거를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출석요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5항).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본회의나 위원회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러는 것임(안 제121조제5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br>~ ④ (생략)<br>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u>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u> 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br><u>&lt;신설&gt;</u><br><br><u>&lt;신설&gt;</u> |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br>~ ④ (현행과 같음)<br>⑤ -----<br>----- <u>다음 각</u><br><u>호의 사람의</u> -----<br>----. -----<br>-----.<br><br>1. <u>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u><br>2. <u>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u> |

헌법 제62조제1항 및 「국회법」 제120조제1항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국회 출석·발언권과 발언 시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62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 답변 의무 및 대리 출석·답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sup>1)</sup>

또한, 「국회법」 제121조제5항은 특정한 사안의 질문을 위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출석 요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sup>2)</sup>

이와 같은 국회의 출석 요구 등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를 통한 견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회로 하여금 헌법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

- 1) 「대한민국헌법」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2)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등의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sup>3)</sup>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함) 및 차장은 헌법,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정부조직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따라,<sup>4)</sup>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 등에 관한 헌법 및 「국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공수처법 제17조<sup>5)</sup>에서 처장의 국회 출석·발언권과 처장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 및 처장의 답변 의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처장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등에 관한

- 3) **공수처법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③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처장·차장 등)** 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4) 2025년 2월 현재 국무위원에는 19명의 행정각부 장관이 있으며, 정부위원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정부위원                                                                              | 근거규정                          |
|-----------------------------------------------------------------------------------|-------------------------------|
|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 | 「정부조직법」 §10                   |
|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위원장·부위원장 포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사무처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7      |
| 금융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및 사무처장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사무처장                                                       | 「개인정보 보호법」 §7의2               |

- 5) **공수처법 제17조(처장의 직무와 권한)**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수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수처법에 더하여 「국회법」에도 처장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처장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 근거를 「국회법」에 명시할지 여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처장과 마찬가지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회법」상 출석 요구 근거는 없으나 개별법에 국회 출석·발언권 및 국회의 출석 요구가 규정된 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sup>6)</sup>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둘째, 법체계적 측면에서, ① 개정안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등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 조항인 「국회법」 제121조제5항에 처장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

---

6)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유사하게 법률에 따라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된 조직이고,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소관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사처는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닌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해석<sup>7)</sup>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개의 항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sup>8)</sup>

②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과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20조<sup>9)</sup>도 개정안에 맞추어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셋째, 차관급 이상 공무원<sup>10)</sup>을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sup>11)</sup>

7) 수사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점, 수사처의 구성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수사처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처는 직제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관 내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8) 개정안 제121조제5항제2호는 출석 요구 대상인 처장과 차장의 대리 출석·답변 및 그 승인 절차를 본문-단서-후단의 구조로 구성하고 있어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별개의 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입법경제 및 법률표현의 간결성 측면에서 처장의 출석 요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되 처장의 답변 의무, 차장의 대리 출석·답변 및 그 승인 절차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 관한 「국회법」 제1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국회법」 제120조(국무위원 등의 발언)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0) 처장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함.

11) 차관급 이상 공무원 출석 요구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 연 번 | 법률안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주요내용                                    |
|-----|----------------|------|-------|-----------------------------------------|
| 1   | 국회법<br>일부개정법률안 | 633  | 전현희의원 | 본회의나 위원회가 출석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 추가 |

|              |
|--------------|
| 문 의 처        |
| 02)6788-5017 |